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93

발의연월일: 2020. 10. 5.

발 의 자: 백종헌・한기호・최춘식

하태경 · 서일준 · 김용판

허은아 • 구자근 • 황보승희

지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,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 받을 수 있음.

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. 한편,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제12조의2제4항,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.

다만,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 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) ① ~ ③ (생 략)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혈을 <신 설>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 회할 수 있다. 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 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 비용의 보상 등) ① -----비용의 보상 등)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 급 받을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 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. 만,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<단서 신설>

	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
	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
	부담하여야 한다.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